

검토보고서

| 안건명 | 부서명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총무과 |

(2017. 1. 23)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7년 1월 10일 (화)
- 제출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7년 1월 11일 (수)

4.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5. 개정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와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출신 독신·신규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조례에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6. 주요 개정 내용

- 가.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변경 (안 제3조)
- 나. 지방출신 독신 · 신규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지원 조항 신설 (안 제6조)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 지방출신 독신 · 신규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

○ 검토의견은

1999년 서울시 공무원 시험 제도가 지역제한의 폐지로 지방출신의 신규 공무원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특히 신규 직원의 경우 급료 중 많은 부분이 전·월세 등 주거비로 지출하게 되어 생활이 매우 어려운 형편임.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방출신의 독신·신규 직원들에게 주거안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면서 이를 통해 행정 업무의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다만 2017년, 2018년 구비 3,950백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직원기숙사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 전에 전형적인 기숙사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셰어 하우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 여론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설계 후에 건축 형태 등이 변경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관 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5.18.>